

영등포구의회
제18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정자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4. 2. 11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75호로 2014년 2월 4일 박정자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·국위·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 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등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
- 라. 구청장은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계양대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5조 및 제8조
-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 제2조 및 제2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우리구에 부합하는 국기계양일 지정 등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에 국기를 계양하여야 하는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고,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 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, 국기게양일 지정, 국기 선양사업 추진 법인·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국기게양일 외에 “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”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, 국기선양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,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참 고 자 료

1 대한민국국기법

제5조(국기의 존엄성 등)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·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1.5.30>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·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
1.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2.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4.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
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.

⑤ 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.

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,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) ①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·지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제24조(국기선양사업의 범위)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